

[홍콩] 2018년 10월 수출현안 · 수입제도 모니터링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통관/검역/라벨링*/수출현안)

□ 주요내용

○ 일본산 컵라면 제품, 라벨링 규정 위반

- 2018년 10월 5일, 홍콩 식품안전센터(CFS)는 왕타이신(Wong Tai Sin)지역의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일본산 컵라면 제품이 영양성분 표시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발표
- 해당 제품의 총 중량은 100g이며, 라벨상 포화지방 함유량이 100g당 2.8g 으로 표기되었으나 홍콩 당국의 샘플 추출 조사 결과 100g당 7.1g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짐
- 홍콩 공중보건 및 지방자치령(Cap 132) 제 61조에 따르면, 식품을 잘못 설명하거나 식품의 성질, 물질 또는 품질과 관련하여 라벨링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만 달러의 벌금 및 6개월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시
- 식품안전센터는 해당 사실을 수출업체에 통보하고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힘

⇒ 시사점 : 제품 영양성분에 대한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여 수출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

*출처 : 홍콩식품안전센터 (2018. 10. 5)

관련홈페이지 : www.cfs.gov.hk

○ 홍콩 식품안전센터, “수입산 일본 버섯 샘플에서 이산화황 검출”

- 2018년 10월 25일, 홍콩 식품안전센터(CFS)는 센트럴에 위치한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판매 중인 포장 버섯제품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되었다고 밝힘
- 해당 제품은 일본에서 수입된 것으로,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방부제인 이산화황이 함유되어 있어 제품군에 대한 추가조사 진행 중
-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위의 샘플에서 함유된 이산화황 수준은 41ppm으로, 홍콩 당국이 허용한 법적 한계 내에 있지만, 해당 첨가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호흡 곤란, 두통 및 메스꺼움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라벨에 명확히 표기해야 함을 지적
-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해당 제품의 공급 업체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판매 중지 조치를 내림
- 홍콩 식품의약품(성분 및 라벨링) 규정(Cap 132W)에 따르면, 홍콩에서 판매되는 포장제품은 함유된 식품성분을 모두 명확히 라벨에 표기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최대 5만 달러의 벌금 및 6개월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시

⇒ 시사점 : 식품 첨가물 및 구성성분에 대한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여 수출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

*출처 : 홍콩식품안전센터 (2018. 10. 25)

관련홈페이지 : www.cfs.gov.hk

□ 냉동·냉장 육류, 냉동·냉장 가금류의 수입허가 신청

- 홍콩 식품안전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냉동·냉장 육류, 냉동·냉장 가금류 수입은 수입 라이선스를 가진 식품수입업자, 식품 유통업자로 등록된 수입업자, 식품안전 규정에서 제외된 식품 취급업자(다른 규정에 따라 이미 라이선스를 취득한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에게만 허가증 발급
 - 수입업체가 육류나 가금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식품안전조례에 따라 홍콩 식품환경위생서 당국에 사전 등록 필요
 - 개인적인 용도로 15kg 이하의 수하물을 홍콩으로 수입할 경우 육류나 가금류의 수입은 라이선스 등록사항에서 면제
- 일반적으로 수입라이선스는 신청 후 24시간 뒤 추심(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신청일·발급일 제외)되며, 일반적으로 추심날짜로부터 6주간, 1번의 선적에 대해 유효
- 수입허가증은 수입업자에게 2부(원본과 복사본)의 라이선스가 발급
 - 육류나 가금류의 수입과 관련된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의 소유자는 식품을 수입한 14일 이내에 수입 라이선스의 원본을 목록과 함께 무역 사무국으로 제출
- 식품 수입업자·유통업자 등록 및 수입 라이선스 신청 시 사무소 방문
 - 주소 : Room 119, 1/F, 258 Queen's Road East, Wan Chai, Hong Kong
- 관련 규정 혹은 수입 등록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 '식품 수입업자와 식품 유통 업자를 위한 등록 절차 가이드' 참조
 - 참고 웹사이트 : URL : www.foodsafetyord.gov.hk

III

통관문제사례

○ 해당사항 없음